

實務英語讀解

SOCIAL INSURANCE DIFINED

社會保險의 定義

"What ? Compulsory insurance ? Compulsory insurance system in this free democratic country ? What an absurd thing !"

This comment was made by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in a meeting held in 1977 after he had reviewed the activities of several domestic associations.

It is true that the word "compulsory" is apt to arouse the hostility of ordinary people against it. It is also true that social insurance plans are characterized by an element of compulsion. Are compulsory things always detestable, then ?

This brochure provides some background material on the nature and objective of social insurance in general and describes the leading specific programs, especially fire insurance field.

First of all, we have to formulate a definition of social insurance. The Commission on Insurance Terminolo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defined social insurance as follows :

A device for the pooling of risks by their transfer to an organization, usually

"아니, 義務保險이라니요? 이 自由民主國家에서 義務保險이라니,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요!"

이는 1977년에 國內의 數個 協會들의 活動에 關係 檢討을 마친 자리에서 어느 國會議員이 한 말이다.

"義務"라는 單語가 보통 사람들에게 敵對感을 주기 쉬운 것은 事實이다. 그리고 大部分의 社會保險計劃에는 義務的인 要素가 그 特徵으로 되어 있어 拒否反應을 불러 일으키기 쉬운 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렇다면 義務事項이란 恒常 唾棄(타기)할만한 것인가?

이 冊子는 社會保險 一般의 性格과 目的에 대한 背景을 說明해 주며 또한 그 代表的인 프로그램, 특히 火災保險 分野에 대해 記述하였다.

그러면 우선 社會保險의 定義부터 내려 보자. 美國의 "保險用語委員會"에서는 社會保險을 아래와 같이 定義한 바 있다:

"리스크(危險)를 풀(pool)로써 한 機關, 대개는 政府機關에 轉嫁하는 方策으로 法에 의해 다

governmental, that is required by law to provide pecuniary or service benefits to on behalf of covered persons upon the occurrence of certain predesignated losses under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 1. Coverage is compulsory by law in virtually all instances ; 2. Eligibility for benefits is derived, in fact or in effect, from contributions having been made to the program by or in respect of the claimant or the person as to whom the claimant is a dependent ; there is no requirement that the individual demonstrate inadequate financial resources, although a dependency status may need to be established ; 3. The method for determining the benefits is prescribed by law ; 4. The benefits for any individual are not usually directly related to contributions made by or in respect of him (or her) but instead usually redistribute income so as to favor certain groups ; 5. There is a definite plan for financing the benefits that is designed to be adequate in terms of long-range considerations ; 6. The cost is borne primarily by contributions which are usually made by covered persons, their employers, or both ; 7. The plan is administered or at least supervised by the government ; 8. The plan is not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solely for its present or former employees.

Thus, social insurance has a basic purpose of providing protection against risks that tend to be beyond the control of the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organized by a private insurance company. In order to study the essence of social insurance system in details, we have to learn about the basic differences bet-

음과 같은 條件下에서 어떤 定해진 損害가 發生할 경우 付保된 사람들을 위해서 金錢上 또는 서어비스上的 惠澤을 주는 것이다. 1. 그 付保對象을 實質的인 모든 경우에 있어 法에 의해 義務化하고 있다. 2. 實際上 또는 事實上 請求人 또는 請求人이 扶養人으로 되어 있는 者에 의한, 또는 關係된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分擔金으로 부터 受惠가 充當된다; 扶養關係 與否는 그 定義가 必要할지 모르나 個人의 不充分한 財源事項에 관해서는 明示할 必要性이 없다. 3. 受惠의 方法은 法으로 明示한다. 4. 어떤 個人에게 돌아가는 惠澤은 分擔金을 낸 額數와 恒常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特定 그루우프에게 有利하도록 점차 收入이 再分配된다. 5. 受惠者를 위해 長期間에 適合한 確定된 財政 플랜이 있다. 6. 費用은 主로 被保險者, 그들의 고용주 또는 兩者로부터의 分擔金에 의해 充當된다. 7. 政府가 플랜을 管理하거나 혹은 최소한 監督을 한다. 8. 政府는 全的으로 現職 또는 前職 從業員만을 위해서 플랜을 作成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社會保險은 個人이나 또는 私保險 會社가 組織한 그루우프의 콘트롤 領域 밖에 있기 쉬운 리스크에 대한 保護를 하기 위한 根本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社會保險의 根本에 대해서 좀더 仔細히 알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과 私保險 시스템의 根本的인 差異點을 論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後論코자 한다.

ween this system and privately sponsored insurance system. We would discuss this matter later.

日本語 漢字 읽기 練習

(2) 燃 焼 の 形 態

可燃性物質の燃焼は固体・液体・気体でそれぞれ形態が異なり、また酸素の供給方法によっても違う。

○ 蒸 発 燃 焼

石油やアルコールが空気中で燃焼する場合、液体の石油やアルコール自身が

燃焼しているのではなく 液体表面から蒸発する可燃性蒸気が空気中の酸素

と化合して発熱・発光す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石油、アルコール自身の

温度はあまり上昇しない。またパラフィンのような固体も加熱によって溶

融した液体が蒸発し、その蒸気が燃焼する。このような 燃焼形態を蒸発燃焼という。

ほとんどの 可燃性液体および少数の可燃性固体(硫黄、油脂など)の燃焼はこの形態をとる。

○ 分 解 燃 焼

木材や石炭などの固体を加熱すると分解して、そのときの温度に応じて各

種のガスを発生する。これを熱分解といい、これによって発生した可燃性分解ガス

(一酸化炭素、水素、メタンなど)が空気と混合して燃焼する場合を分解燃

焼という。もし加熱が不十分であると分解ガスが燃焼が起る濃度まで発

生せず、熱分解のみで 終わってしまう。揮発性の液体や固体の蒸気圧は

低^{てい}温^{おん}度^どでも 比^ひ較^{かく}的^{てき} 大^{おお}き^きい^いので 蒸^{じょう}発^{はつ}燃^{ねん}焼^{やう}は ^{*10} 起^おこ^こり^りや^やす^すい^いが 分^{ぶん}解^{かい}燃^{ねん}焼^{やう}は 熱^{ねつ}分^{ぶん}解^{かい}
 とい^いう 過^か程^{てい}が 間^{あい}に 入^{はい}り, こ^これ^れは かな^こり^りの 高^{こう}温^{おん}を 要^{よう}す^する^るので 起^おこ^こり^りに^にく^くい.

- * 1. それぞれ： 각각.
- 2. よっても： よる(의하다. 따르다)의 音便形； ~ (에) 따라서도.
- 3. 燃焼しているのではなく： 燃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 4. 発光するのである： 発光하는 것이다.
- 5. このような： 이와 같은.
- 6. ほとんど： 대개, 거의.
- 7. 不十分であると： 불충분하면.
- 8. 熱分解のみで： 열분해만으로.
- 9. 終わってしまう： おわる(끝나다)의 音便形 + しまう (~해버리다); 끝나버리다.
- 10. 起こりやすいが： 일어나기 쉬우나 (동사의 연용형 + やすい; ~하기 쉽다.)
 " + にくい; ~하기 어렵다.)

알 립

本 "防火情報"은 技術職 여러분을 위해 隔月로 發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本誌를 더욱 알
 차게 가꾸어 育成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叱正을 바라며 기타 掲載를 원하거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방재 연구부로 연락 바랍니다.